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530

발의연월일: 2024. 9. 2.

발 의 자:황명선·박희승·송재봉

박민규 • 정동영 • 염태영

임광현 · 장경태 · 강득구

김우영 · 임미애 · 홍기원

김현정 · 문진석 · 황정아

복기왕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은 「헌법」상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 대한민국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여야 함.

그러나, 최근 헌법과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 부인·날조하는 발언을 하는 인물을 장·차관에 지명하거나 임명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일부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등이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명백히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하여 군 교재에서 삭제하거나 분 쟁지역으로 표현하고 관련 조형물들을 철거하는 등 향후 공직에 나서는 자들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역사적 왜곡·날조 역시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이용,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그 밖에 공연히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의 방법으로 국경일 내지 기념일의 대상이 되는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날조하거나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영해 및 영공 등 그사실에 대하여 부인·왜곡·날조한 자를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에서 우리나라 헌법 가치와 역사의식및 영토주권의 인식 등을 바로 세우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아니하고"를 "아니하고 제33조의2를 적용하며"로 한다.

제33조의2를 제33조의3으로 하고,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정무직공무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 망의 이용,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의 방법으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경일의 대상이 되는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날조한 자
- 2.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 망의 이용,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종 정부 주관 기념일의

대상이 되는 역사적 사실을 부인 · 왜곡 · 날조한 자

3.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 망의 이용,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의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영해 및 영공 등 그 사실에 대하여 부인·왜곡·날조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 범위) ① (생 략)	제3조(적용 범위) ① (현행과 같
	승)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	2
3항제1호의 정무직공무원에 대	
하여는 제33조와 제69조를 적용	
하지 <u>아니하고</u> , 대통령령으로	<u>아니하고 제33</u> 조의2를 적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	용하며
하여는 제65조와 제66조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33조의2(정무직공무원의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정무직공무원
	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
	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
	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 · 게시 또
	는 상영, 그 밖에 공연히 진행
	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의 방법으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경일 의 대상이 되는 역사적 사실 을 부인·왜곡·날조한 자

- 2.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 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 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 는 상영, 그 밖에 공연히 진행 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각종 정부 주관 기념일 의 대상이 되는 역사적 사실 을 부인·왜곡·날조한 자
- 3.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 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 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 는 상영, 그 밖에 공연히 진행 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의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주권

			이 미치는 영토·영해 및 영
			<u>공 등 그 사실에 대하여 부인</u>
			·왜곡·날조한 자
제33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33조의3(벌금형의 분리 선고)
(생 략)			(현행 제33조의2와 같음)